

##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이미화<sup>1)</sup> 김은설<sup>2)</sup> 김길숙<sup>3)</sup> 이진화<sup>4)</sup> 윤지연<sup>5)</sup>

### 요약

본 연구는 부모교육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와 예비 부모의 높은 요구를 근거로 국가차원의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영유아기 대상 주요 부처별 유관 사업센터의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예비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결과,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부모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80%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자녀를 임신하는 등의 시기부터 부모교육이 시작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부모교육이 제도화가 되었을 때, 참여하겠다는 의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부모교육 제도화에 대한 높은 요구에 따라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위시한 몇몇 법령들을 살펴보고, 부모교육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보완하였으며 그 후 현행 유관부처별 센터들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시스템 방안을 구축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제도의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법적인 근거마련, 지역거점센터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교육, 부모교육 제도화, 부모교육 제도 시스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 교육과정 개발(이미화 외, 2015)’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1)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3)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4)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 I. 서론

부모는 자녀의 생존을 위한 양육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규범과 가치관 제공 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유아는 타인의 돌봄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적, 정의적, 도덕적 소양을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부모역할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본성과 좋은 습관을 발달시키며 유전적인 소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 역할은 자녀와 부모, 사회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므로 자녀의 욕구와 기질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되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정현숙·유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 2009).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이 성장했던 가족의 생활패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역할을 기대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부모는 과거와 달리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고, 변화된 사회 및 가족적 상황과 부모 역할의 기대로 인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모역할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조되는 부모 역할로 인해 부담이 더 커졌다(정현숙·유계숙·최연실, 1997). 이와 같이 부모들이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부모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적합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 2011; 도현심, 2014).

부모교육은 가족과 개인 차원에서 부모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모교육이 사회를 유지하고 중요한 영유아 육아 정보 및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써 그 제도화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도현심, 2014).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초저출산국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와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 그리고 지원에 따르는 부모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교육이 사적인 차원의 부모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공적 차원의 역할이 부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으로 정부 유관 부처별 거점센터들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도 예비 부모과정이 운영되는 등 부모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김은설 외, 2011). 또한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되기

로 다양한 부모역할 연습하기, 양육실제 훈련, 자녀들과 함께 놀아 주는 방법 등의 내용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넓게 부모의 인문사회적 교양을 다루는 강좌도 운영되고 있다(나중혜·김수연·안영규, 2005; 이미화·양미선·장혜진·황혜정·엄지원, 2013; 이원영·배소연, 2000). 그러나 이 같은 부모교육은 일회성 또는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교육의 내용에서 시민교육차원에서 요구되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가치, 민주시민으로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 등 정부의 중요 정책 등에 따른 부모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미화 외, 2015).

‘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이며 ‘제도화’는 “제도화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5).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부모교육 제도화란 부모교육 즉 부모역할, 부모참여, 부모기대, 부모와 관련된 법률, 관습이나 도덕,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제도로 성립된다는 것은 해당 영역과 주제 등이 사회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써 작용하여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부모교육이 제도화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의 역할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도화’는 내용과 형식이 기본전제가 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부모교육 제도화의 내용은 ‘부모’교육과 관련된 일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부모되기과 같은 부모역할 역량, 정부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공공 교육 등이 포함되고 ‘제도화’는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는가이다. 일련의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진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진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스템에 따라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제도화 방안과 관련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부모교육이 체계적이며, 그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민교육차원에서 부모역할의 가치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은설·최진·조혜

주·김경미, 2009; 김은설 외, 2011). 실제 부모교육 제도화와 관련한 국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각 주마다 제도화된 방식이나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부모교육 교사 자격과 부모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정부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김은설 외, 2009). 싱가포르는 사회·가족발달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산하의 가족발달단(The Family Development Group:FDG)에서 가족교육과를 통해 공공교육으로 부모교육을 주관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1).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역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의 거점센터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부에서 그 예산과 센터의 전달체계를 지원하고 있다(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Rowe Davies Research Ltd, 2012). 이들 선진 국가의 부모교육의 제도화 과정의 특징은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전담하는 센터 등의 전달체계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의 부모교육 제도화 과정을 탐색한 연구들을 보면 우선 김은설 외(2009, 2011)에서는 부모가 참여하는 수업, 주말 가족 활동, 부모교육 자율공동체 등의 활성화와 부모 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모 교육을 위한 지자체 및 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부모교육 이수자에게는 사회적 크레딧(교육보험료, 학원비 등 일정 비율 적립)을 주어 참여의지를 높이고 부모교육 참여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의 ‘제도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영유아 부모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등 제도화된 부모교육의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는 부모교육이 고등학교와 대학생의 정규교육과정이라는 제도 속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은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단기·중기 전략을 개발하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부모와 영유아의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이 제도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및 부모교육 대상이 사회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에 대한 기대는 부모교육 제도화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부모교육 제도화는 부모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와 관련된 센터별 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고찰하고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 국

가차원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제도화를 현재의 부처 유관 센터의 거점 지역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역량이 약화된다는 우려점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통해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안인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부모교육 제도화 도입에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영유아기 유관 센터별 부모교육 실시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유아를 위한 행정 조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이다. 교육부에는 유아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과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각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15곳, 유아교육체험원 3곳 등의 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립, 집행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 소속하에 보육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를 두고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 시·도·군·구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관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여성 지원을 위한 가족·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시·도·군·구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와 연계해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서현석, 2014). 본 절에서는 각 부처의 대표적인 유관 센터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및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6조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다(법령정보센터, 201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14년 주요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부모 및 보육교직원 등의 지원 및 교육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2014년 수행된 부모교육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양육자와 자녀교육의 참여인원이 55,9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교육 49,825명, 아버지 교육 5,258명, 예비 부모 교육 5,01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내용은 크게 육아, 부모의 자아개발,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 교양 강좌 및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육아 관련 교육이었다(2,158건(61.4%)). 다음으로는 기타 579건(16.5%), 부모의 자아계발 433건(12.3%), 교양강좌 292건(8.3%),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해 54건(1.5%) 순이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방법과 같은 육아관련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산하 지역거점센터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근거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가족 및 가정건강의 전문가들이 가족 및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3개년 간 부모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부모교육 실시 센터 수는 11개소 감소하였지만, 실시 횟수 및 참여 인원수는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31개 센터가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참여인원은 93,244명이었으며, 총 3,316회 시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교육을 가족교육의 영역에 포함시켜 유·아동기 부모, 학령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 중에서도 부모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가족교육과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며, 예비 부부 교육도 해당된다. 반면, 남성대상의 교육은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생애주기(예비 부모, 영유아기, 아동기/학령기, 청소년기), 아버지 교육 등 2회기(회기당 2시간)로 구성된 5종의 매뉴얼이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군부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기업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운영 시에도 해당 매뉴얼이 활용된다.

### 3. 유아교육진흥원 및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주요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은 관내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원(서울시)이나 학부모 연수의 형태로 매년 월 단위의 정기적인 일정으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주로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대화법, 양육기술, 놀이방법 등이나, 유아교육관련 지식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에 기반한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은영 외, 2014). 한편 전국학부모교육지원센터(학부모 On누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및 단위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지원,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기 주도 학습 코칭 매뉴얼, 자유학기제, 학부모 교육 매뉴얼,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다. 더불어 다양한 워크북, 동영상 자료, 부모교육 교재를 유아교육(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으로 구분하여 탑재하고 있다(전국학부모교육지원센터, 2015).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부모참여, 부모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편, 부처의 유관 센터에서 사업특성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현재의 부모교육은 각각의 센터가 지역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각자 필요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 형태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약화, 부모교육 전달 체계로써의 미흡함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전달체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 투자의 중복, 주제의 중복 혹은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의 부재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부모교육이 제도화된 전달체계 안에서 서로 연계성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 Ⅲ. 부모교육 제도화에 대한 예비 부모·부모의 요구 분석

#### 1. 연구대상 및 방법

전국의 지역, 연령, 성, 학력, 직업, 소득 분포에서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한 한국리서치의 패널(Master Sample)을 이용하였다. 전체 312,153명 중, 본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 기혼남녀 86,7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2015년 2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의 지역규모, 연령(영아, 유아)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어머니(예비모, 영유아모)가 806명, 아버지(예비부, 영유아부)가 206명으로 예비 부모를 포함한 영유아부모 1,012명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는 2015년 4월, 약 4주간 온라인 웹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 문항은 부모교육 제도화도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교육 제도화 찬반과 각각의 이유와 적절한 부모교육 시작시기, 부모교육 참여 의향 등이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1,012)	전체	100.0(1,012)
성별		직업	
여자	79.6( 806)	자영업/생산직	8.7( 88)
남자	20.4( 206)	사무직	46.0( 466)
연령		경영/전문직	9.9( 100)
20~29세	9.4( 95)	가정주부	32.9( 333)
30~39세	79.8( 808)	학생 및 기타	2.5( 25)
40세 이상	10.8( 109)	최종학력	
부모 구분		고등학교 졸업 이하	9.5( 96)
예비 부모	19.9( 201)	전문(2·3년제)대학교 졸업	25.1( 254)
영아(0~2세) 부모	38.8( 393)	4년제 대학교 졸업	50.3( 509)
유아(3~5세) 부모	41.3( 418)	대학원 재학 이상	15.1( 153)
영유아 자녀 수		가정 특성	
1명	71.6( 581)	맞벌이 가정	53.8( 538)
2명 이상	28.4( 230)	맞벌이 아님	46.2( 462)
첫째 영유아 자녀 이용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어린이집	55.7( 452)	260만원 이하	17.0( 172)
유치원	17.4( 141)	261만원~350만원	24.2( 245)
가정양육	24.2( 196)	351만원~450만원	26.4( 267)
학원/기타	2.7( 22)	451만원 이상	32.4( 328)



## 2. 부모교육제도화 도입에 대한 인식

### 가. 부모교육 제도화 필요 여부

부모교육 제도화 필요 여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모두 8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87.2%, 남성 86.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 부모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여성의 경우 84~100%, 남성이 경우, 82.1~100%의 찬성율을 보여 부모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부모교육 제도화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여			남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전체	87.2	12.8	100.8(806)	86.9	13.1	100.0(206)
부모 구분						
예비 부모	89.4	10.6	100.0(160)	82.9	17.1	100.0( 41)
영아 부모	85.1	14.9	100.0(302)	84.6	15.4	100.0( 91)
유아 부모	88.1	11.9	100.0(344)	91.9	8.1	100.0( 74)
연령						
20~29세	90.2	9.8	100.0( 92)	100.0	-	100.0( 3)
30~39세	86.6	13.4	100.0(648)	87.5	12.5	100.0(160)
40세 이상	89.4	10.6	100.0( 66)	83.7	16.3	100.0( 43)
월평균 가구소득						
260만원 이하	89.1	10.9	100.0(138)	85.3	14.7	100.0( 34)
261~350 만원	85.2	14.8	100.0(189)	92.9	7.1	100.0( 56)
351~450 만원	87.3	12.7	100.0(221)	87.0	13.0	100.0( 46)
451만원 이상	87.6	12.4	100.0(258)	82.9	17.1	100.0( 70)
직업						
자영업/생산직	96.2	3.8	100.0( 52)	83.3	16.7	100.0( 36)
사무직	88.8	11.2	100.0(329)	88.3	11.7	100.0(137)
경영/전문직	84.7	15.3	100.0( 72)	82.1	17.9	100.0( 28)
가정주부	84.0	16.0	100.0(331)	100.0	-	100.0( 2)
학생 및 기타	100.0	-	100.0( 22)	100.0	-	100.0( 3)

부모교육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부모교육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

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6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4%로 높았다. 한편, 남성의 경우는 여성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이유였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70.4%로 여성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반면, 책,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14.8%)가 2순위로 응답되어 여성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인 2순위 이유와 차이가 있었다.

〈표 3〉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음	제도화할만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매체를 통해 충분히 정보를 얻음	기타	계(수)
여	67.0	20.4	7.8	3.9	1.0	100.0(103)
모 구분						
예비 모	64.7	17.6	5.9	11.8	-	100.0( 17)
영아 모	77.8	15.6	2.2	2.2	2.2	100.0( 45)
유아 모	56.1	26.8	14.6	2.4	-	100.0( 41)
남	70.4	7.4	7.4	14.8		100.0(27)
부 구분						
예비 부	71.4	-	14.3	14.3	-	100.0( 7)
영아 부	85.7	-	7.1	7.1	-	100.0(14)
유아 부	33.3	33.3	-	33.3	-	100.0( 6)

나. 부모교육 시작의 적절한 시기 및 참여 의향

부모교육 시작의 적절한 시기와 참여 의향을 예비 부·모, 영아 부·모, 유아 부·모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부모교육 시작의 적절한 시기로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영아 모(4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교육을 하기에 바람직한 시기로 신혼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예비 모의 경우(39.4%)뿐만 아니라 유아 모(34.0%)의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이른 시기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남성 응답자의 경우, 35.0%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를 바람직한 시기

라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 부(39.0%)와 영아 부(37.4%)는 여성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 유아 부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시기부터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았고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시기는 29.7%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처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교육의 바람직한 시기로 신혼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덧붙여 현재 남성이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바람직한 부모교육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가치관 형성 시기인 청소년기	대학생 시기	기타	계(수)
여	37.7	23.0	18.2	17.1	3.5	0.5	100.0(806)
모 구분							
예비 모	39.4	15.6	25.6	15.6	3.8	-	100.0(160)
영아 모	41.1	23.8	16.9	15.6	2.3	0.3	100.0(302)
유아 모	34.0	25.6	16.0	19.2	4.4	0.9	100.0(344)
남	35.0	27.2	17.5	17.0	2.9	0.5	100.0(206)
부 구분							
예비 부	39.0	12.2	26.8	19.5	2.4	-	100.0( 41)
영아 부	37.4	29.7	14.3	15.4	2.2	1.1	100.0( 91)
유아 부	29.7	32.4	16.2	17.6	4.1	-	100.0( 74)

〈표 5〉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

단위: %(명)

구분	반드시 참여	가능하면 참여	참여하지 않음	계(수)	$\chi^2(df)$	구분	반드시 참여	가능하면 참여	참여하지 않음	계(수)
전체	21.1	75.2	3.7	100.0(806)		49.26 (2)***	전체	21.4	76.7	1.9
예비모	18.8	68.1	13.1	100.0(160)	예비부		14.6	85.4	-	100.0( 41)
영아모	21.9	76.8	1.3	100.0(302)	영아부		20.9	76.9	2.2	100.0( 91)
유아모	21.5	77.0	1.5	100.0(344)	유아부		25.7	71.6	2.7	100.0( 74)

\*\*\*  $p < .001$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여성이 3.7%, 남성이 1.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 대부분 부모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20%이상은 반드시 부모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부모인 경우에 비해서 예비 부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은 영유아 부모에 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 부여가 아직은 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종합해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능한 한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0%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록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수치가 1.9%(남성), 3.7%(여성)로 매우 낮았지만, 부모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0%로 나온 것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나 예비 부모들이 보다 열의를 갖고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참여해야 하겠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제도화 마련과 함께 양질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IV.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부모교육 제도화의 성공적인 관건은 시스템 구축이다.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의 부모교육은 국가 수준과 지역 정부, 그리고 각 지역 정부의 거점센터 등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형태로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공적인 부모교육 제도화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거점센터 등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제도화의 시스템 즉 전달체계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겠다.

### 1. ‘부모교육 제도’ 시스템 방안 도출

#### 가. 부모교육 제도화의 목표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방안을 도출하기 앞서, 우리나라 부모교육 제도화의 기본 방향설정을 위한 전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제도화의 전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는 부모참여 및 지원 등의 일련의 부모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박성희, 2010). 이에 부모교육 제도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

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본 부모교육과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부모교육 제도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포괄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목표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영유아는 부모와 사회,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영유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교육은 영유아의 권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부모 또는 양육자(부모에 준하는)의 입장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가질 수 있는 목표이다. 첫째,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한다. 둘째,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셋째,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는 자신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보육서비스 등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넷째,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는 부모교육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부모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부모들은 앞서 세 가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네 번째인 부모교육 제도의 이해와 활용은 부모 혹은 양육자(부모에 준하는)의 권리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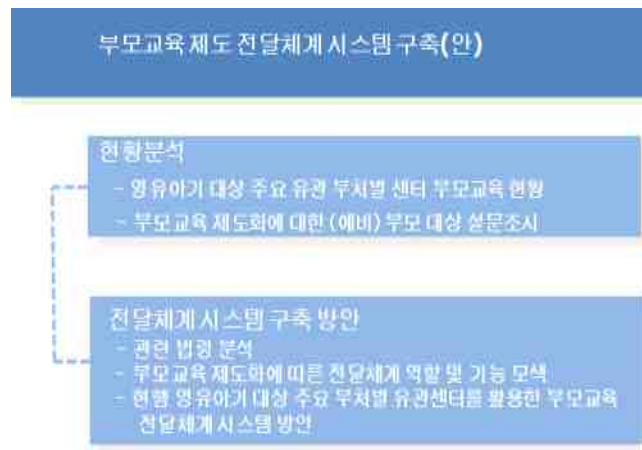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가 부모교육 제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자녀)의 생애 주기와 각 영유아의 흥미와 특성에 적합하게 부모역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아동관련 정책 및 지침 등의 내용을 부모에게 제공한다. 셋째, 부모참여 및 지원, 부모안내 등의 제도화된 정책의 실행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유관 기관은 부모를 제도화된 정책 테두리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통해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앞서 제시된 두 가지는 부모교육을 운영하면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한다면 뒤의 세 가지는 부모교육 제도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적인 측면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교육 제도화와 관련된 세 주체의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부모교육 제도' 시스템 구축(안)을 위한 절차

부모교육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모교육 관련 체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부모교육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살

퍼봄으로서 제도화를 위한 규정마련(안)을 마련하고, 현재 산발해있는 부모교육 시행 기관 현황분석 결과에 따라 부모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도출한 세부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교육 제도화를 방안 도출 절차

## 2.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안)

### 가.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현행 법령 및 근거 법령(안) 검토<sup>6)</sup>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교육’에 대한 형식과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부모교육과 관련한 법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인성교육 진흥법」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부모’와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6) 본 절의 건강가정기본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인성교육진흥법(안), 평생교육법 등의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출한 내용임(2015. 6. 7. 인출).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19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가정의 핵심요인이라고 볼 때, 이 규정을 근거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의 건강가정교육에 대한 규정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며,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최종전달체계인 부모에게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현재의 부모교육을 ‘제도화’ 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실행하는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다. 이들 법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부모참여 및 지원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좋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인간생애 초기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교육제도화를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과 제11조의 보육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에서 부모교육제도화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부모교육 제도화의 실행은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25조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명시 항목에 구체적으로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경우, 제3조의 유아교육 책임을 규정한 항목에서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부모교육의 제도화의 근거를 「유아교육법」에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제2항에서도 제3조의 책임에 따라 유아교육기본발전계획 수립항목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의 제도화를 규정하는 것과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과 제19조제4항의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부모교육제도의 내용 및 실행방법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진흥법」으로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유치원의 인성교육의 범위를 부모에게까지 확대

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4조의 국가 책임 등에서 제안가능하다. 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과 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에서 유치원 부모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부모교육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예비 부모로써 갖추어야 하는 인성적 가치와 핵심덕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부모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평생교육법」 제2조 등의 평생교육의 목적 등의 내용을 토대로 부모교육은 앞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학령기와 대학, 성인기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대상, 장소와 시기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현행 관련법에서 근거를 찾아보고, 규정 마련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법령들을 인간생애 주기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을 근거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현행 법 고찰 및 근거규정마련(안)

구분	현행법 내용	근거 규정 제안(안)
건강 가정 기본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li> <li>- 제19조(교육·연구의 진흥) 제2항</li> <li>- 제32조(건강가정교육)제2항②</li> <li>-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li> <li>- 시행규칙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제도로써 부모교육 명시 가능</li> <li>- 제19조제2항 ‘부모교육 제도화 내용을 명시</li> <li>-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점 센터로서 역할 및 기능에서 ‘부모교육’ 제도화 명시</li> <li>- 시행규칙 제4조 부모교육용 교재교구개발 내용 명시</li> <li>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제도 전달체계시스템으로써의 역할과 기능 명시(안)</li> </ul>
영유 아 보육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책임)</li> <li>-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li> <li>-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 책임에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부모교육’에 대한 책임과 제도화에 내용 명시</li> <li>- 제11조에 보육계획 수립에서 부모교육제도화 계획 및 시행방안 포함 가능</li> <li>- 제7조는 거점센터로서 부모교육제도화 내용 명시</li> <li>- 제25조는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제도화 실행방안 명시</li> <li>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제도 전달체계시스템으로써의 역할과 기능 명시(안)</li> </ul>



(표 6 계속)

구분	현행법 내용	근거 규정 제안(안)
유아 교육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책임)</li> <li>-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li> <li>- 제6조(유아교육진흥원)</li> <li>-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 책임에 재원 유아 부모 즉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 내용 명시</li> <li>- 제3조의2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매해 부모 교육제도화를 명시해서 기입</li> <li>-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및 기능 명시</li> <li>- 제19조의4는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제도화 실행 명시</li> <li>-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제도 전달체계시스템으로써의 역할과 기능 명시(안)</li> </ul>
인성 교육 진흥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국가 등의 책무)</li> <li>-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li> <li>-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li> <li>-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에서 부모교육을 인성교육으로 포함 명시</li> <li>- 제5조 인성교육기본방향으로 부모교육제도화 명시</li> <li>- 제6조에서 영유아기부터 초종등에 이르기까지 종합계획 수립에서 부모교육 의무화 명시</li> <li>- 제15조에서 부모교육제도화 예산 지원 명시</li> <li>부모교육제도 전달체계 시스템의 행·재정적 근거 삽입(안)</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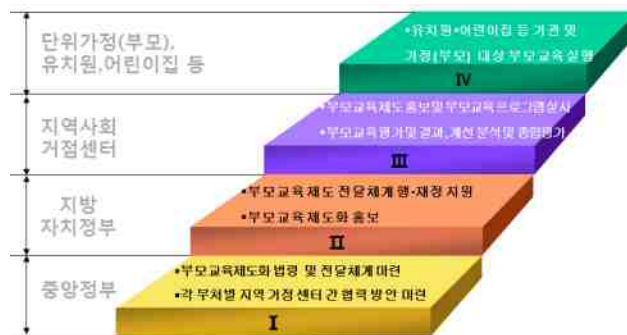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는 지속적인 부모교육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제도를 위한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아직 없다.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부모교육 제도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 6>에서 제시한 여러 종류의 법 중에서 상위 법의 형태로 부모교육제도 전달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이 삽입되어야 하고, 각각의 유관 부처의 센터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는 법규정 혹은 지침에서 전달체계 시스템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겠다.

#### 나. 부모교육제도화 전달체계 구성(안)

부모교육 제도화의 전달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부모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부모참여 및 지원 등의 부모교육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따라

서 우리나라도 현행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처별 유관 지역센터 등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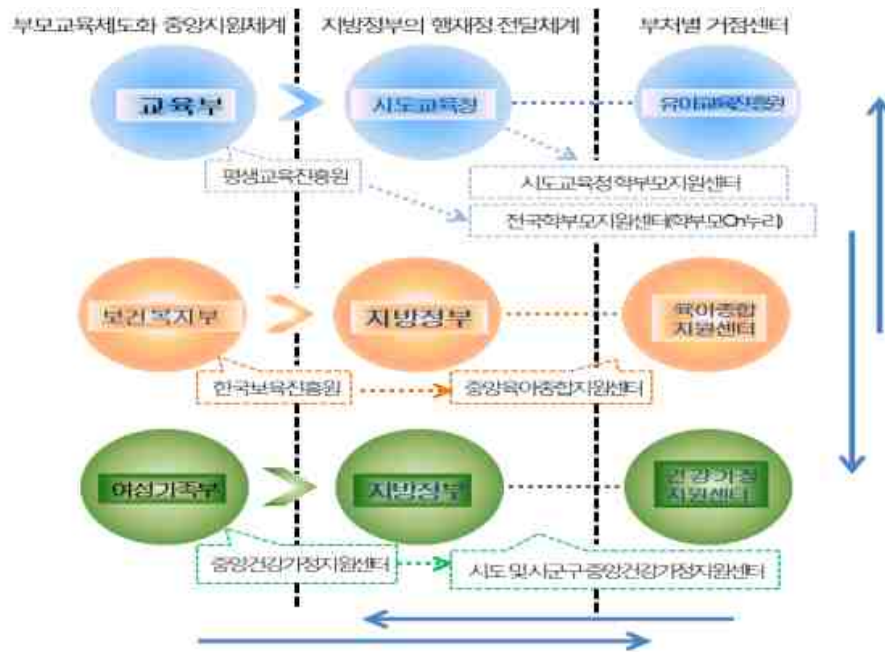
첫째, 중앙정부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재정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부처간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제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며, 특히 거점센터에서 제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거점센터와 협력하여 제도화된 부모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부모들의 적극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거점센터는 해당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 연계, 가정 및 가족지원을 위한 단위별 가구와의 연계, 또 다른 지역사회의 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부모교육 제도가 정착되고, 그 가운데서 부모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지방정부의 거점센터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부모교육제도화의 전달체계 역할 및 기능

위와 같은 부모교육 전달체계를 현재의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접목하여 각각의 센터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성(안)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서로 상이하기는 하나,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각 센터의 특성을 부모교육제도화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최종 전달체계이며,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도 함께 그 기능을 같이하고는 있으며, 특

히 어린이집이 최종 전달체계인 기관이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가족이 최종 전달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로 간의 부모교육 기능을 나누거나 동일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부모교육 제도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지원체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 현행 부모교육관련 지역센터 활용한 구축(안)

현행 대표적인 부처별 영유아 대상 지역거점센터인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각각의 사업 특성에 따라 중점 내용이 다르고, 그 기능에 따라 규모와 지역별 설치 현황이 다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17개 시도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까지 확대되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유사하다.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서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부모교육 제도화의 협조 체제의 예시를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대상 정부재정 지원정책 등과 관련된 부모교육은 해당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영유아기 생애 주기별로 제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아

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각각 물리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지역 내 부모 및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참여를 실시한다. 모든 지역의 부처별 거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점센터에서 협력하여 해당 부모교육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점 센터가 각각의 기능을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체험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을 포함한 부모참여 지원에 강점이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과 연결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로의 기능을 교차한 홍보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활용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조손가정의 아이들의 부모교육이나 체험활동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처별 거점센터를 활용한 부모교육 제도화 실현은 각각의 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지원사업의 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교육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와 예비 부모의 높은 요구를 근거로 국가차원의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부모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 부모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임신하는 등의 시기부터 부모교육이 시작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부모교육이 제도화가 되었을 때, 참여하겠다는 의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조사의 분석에 근거해서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현행 법령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위시한 몇몇 법령들이 충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부처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설치된 유관 부처의 지역거점센터에서 부모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공공성의 측면이 강조된 내용보다는 좋은 부모되기 등이 상대적으로 비

중이 높았고, 일회성이나 단기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각 부처별 유관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부모교육 제도화 수립의 필요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현행 유관부처별 센터들을 중심으로 방안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요약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육 제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을 고찰한 결과, 인간생애주기별에 맞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건강가정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스템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교육제도가 확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에 정부는 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신청할 때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민원이용 공용 컴퓨터나 안내지로 자녀양육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부모교육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교육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화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관련 정책 결정은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에서 실시하며, 수립된 정책은 지역사회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학전 시기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위 기관과 지역사회 거점센터 간의 연계로 실행될 수 있고, 가정양육 부모는 거점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연계된 거점 지역센터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에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모교육제도를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이라 함은 김은설 외(2009, 2011)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모교육 내용 전달을 담당하는 인력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을 의미한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 인력은 초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모교육제도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에 중요하다.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사회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교육을 단순히 자녀를 잘 키우는 차원에서 가정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화된 영역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제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공적인 특성이 부가되면서 공적인 공간으로 옮겨왔다. 즉,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단위이자 사회와 세대 승계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강조된 것에 더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모지원 정책, 자녀돌봄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적인 정책 등이 결합되어서 이전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제도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부모교육이 제도화되어 시행되는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부모역할을 지원해 줄뿐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여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그 시스템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행정 및 재정 전달체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구축방안을 탐색해 봄으로써 발전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조사연구가 병행되어 진행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문헌고찰을 통해 방안을 모색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점에 한계점이 있으며 현행 유관 센터를 활용한 방안으로 실제 운영 사례를 탐색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적인 운영을 토대로 부모교육 제도의 시스템 방안 설계에 대한 연구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2015). <http://www.stdweb2.korean.go.kr>에서 2015. 8. 6. 인출.
- 김은설·최진·조혜주·김경미(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나중혜·김수연·안영규(2005).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원장, 교사, 부, 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05-519.
- 도현심(2014).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 박성희(2010). 아동청소년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독일의 교육복지적 가족지원과 부모교육방법의 의의. **한국교육**, 37(1), 207-2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에서 2015. 6. 7. 인출.
- 서현석(2014). 한국 학부모 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8), 363-380.
- 싱가포르 사회가족부(2009).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
-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 외(2015).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양미선·장혜진·황혜정·엄지원(2013). 누리과정 가정연계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원영·배소연(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1.
-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2015).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2015. 6. 7. 인출.
- 정현숙·유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2009). 부모학. 서울: 신정.
- 정현숙·유계숙·최연실(1997). 결혼학 개론. 서울: 상명대학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4). 2014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5년 4월호 패밀리 웹진. 2015. 6. 26. 인출.
- Netherlands Youth Institute(2012).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http://www.youthpolicy.org/national/Netherlands\\_2007\\_Youth\\_Policy\\_Overview.pdf](http://www.youthpolicy.org/national/Netherlands_2007_Youth_Policy_Overview.pdf). 2015. 3. 15. 인출.
- Rowe Davies Research Ltd(2012). The Netherlands Study - Learning from the Netherlands to improve outcomes for New Zealand's children. [www.rowedaviesresearch.co.nz](http://www.rowedaviesresearch.co.nz)에서 2015. 3. 15. 인출.

·논문접수 11월 1일 / 수정본 접수 12월 12일 / 게재 승인 12월 22일

·교신저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메일 [mhlee@kicce.re.kr](mailto:mhlee@kicce.re.kr)

## Abstract

### Exploring measures to establish a Delivery system for instituting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Meehwa Lee, Eunseol kim, Gilsook Kim, Jinwha Lee, Jiyeon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asures for a specific and practical system to institute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at national level, based on a high demand by parents and parents-to-be. The current state of parental education for parents of infants and children, and major government agencies were examined, and the need for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was investigated, targeting parents and parents-to-be. As a result, among parents and parents-to-be, more than 80% of the participants agreed with instituting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and most of them desired that parental education would start at pregnancy. Furthermore, if parental education program is develop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was also relatively high. In accordance with the high demand for instituting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measures were examined to effectively deliver the program. Several legislation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ere examined, and the need for parental education system was further supplemented, and measures were subsequently established with current relevant governmental agencies. In addition,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delivery system of a parental education institution, use of local centers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Parent-education, an institutional system of parent-education